



보도참고자료

	배 포		포	2020. 7. 13.(월)				
	담 당 과		과	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				
•	과		장	문은희 (☎ 043-719-3651)				
		무		지영혜 (☎ 043-719-3664)				

바이오의약품 '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' 확정

조사 · 단속 시 처벌 근거로 활용…업계에서 이행토록 행정지시

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'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'을 확정하고, 이를 조사·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 -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'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'의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합니다.
 - 주요 내용은 ▲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▲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·운영 ▲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입니다.
- □ 아울러,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하였으며,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·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.
 - 행정지시의 주요 내용은 ▲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'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'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 ▲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8월 17일부터 적용하여 운영 등입니다.







- □ 식약처는 "이번 평가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툴리눔 제제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11월경 현장 점검하고, 2023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습니다.
 - * 평가대상 : ('20년) 보툴리눔 독소제제 → ('21년) 국가출하승인 대상의약품 → ('22년) 유전자재조합의약품 → ('23년) 전체 바이오의약품
- <첨부> 1.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
 - 2. 평가지침 미이행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







첨부1

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

평가항목 대분류	평가항목		조 이 교기 나는				
(*근거: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1] 해당 항목)	중분류	소분류	주요 평가사항				
1의2 품질경영	3개	6개	√ 경영진의 책임 하에 품질경영시스템 수립·운영에 관한 사항√ 데이터 완전성 취약분야에 대한 품질 위험관리 실시에 관한 사항				
2.2 자동화장치 등의 관리	17개	45개	✓ 컴퓨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데이터의 접근권한 설정 및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✓ 데이터 생성, 변경, 삭제 시 점검기록 (audit-trail) 정보의 유지에 관한 사항				
3.3 품질(보증)부서 책임자	4개	8개	√ 제품 품질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검 및 승인에 관한 사항				
5.1 문서의 작성	7개	14개	✓ 모든 작성(입력)된 기록의 완전성 유지에관한 사항				
5.2 문서의 관리	3개	7개	√ 시험결과 재구성이 가능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				
6.6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	2개	3개	√ 컴퓨터시스템 정상 작동의 보증을 위한 검증에 관한 사항				
7.1 시험관리	7개	187#	✓ 시험결과와 과정을 모두 포함한 기록의 보관에 관한 사항✓ 품질시험 일련의 모든 기록을 포함한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				
13. 자율점검	2개	5개	√ 데이터 완전성 관리를 포함한 자체 실사에 관한 사항				
14. 교육 및 훈련	1개	3개	✓ 모든 작업자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				







첨부2

평가지침 미이행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

		근거	행정처분				
	위반사항	법조문	1차	2차	3차	4차	
제48조제 제조 및	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14호에 따라 의약품 품질관리에 관하여 식약 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「약사법」제76조 제1항제3호	전 제조 업무정지 15일	전 제조 업무정지 1개월	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	전 제조 업무정지 6개월	
	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격한 제품만을 출고하 경우	「약사법」제38조 제1항 및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48조	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	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	품목 허가취소	-	
제조위생 관리기준 두지 않은 제조지시 기록서 5	서, 제조관리기준서, 관리기준서 또는 품질 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은 경우 서, 시험지시서, 제조 E는 시험성적서를 작성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「약사법」제38조 제1항 및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제48조	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	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	품목 허가취소	-	
	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않은 경우		품목제조 업무정지 1개월	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	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	품목 허가취소	
위탁자	위탁·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		품목제조 업무정지 3개월	품목제조 업무정지 6개월	품목제조 업무정지 9개월	품목 허가취소	
수탁자	제품표준서, 및 제조 관리기준서 등 기준서를 작성·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지시서, 시험지시서,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	「약사법」제3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	제형제조 업무정지 3개월	제형제조 업무정지 6개월	제형제조 업무정지 9개월	제형제조 업무정지 9개월	
	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	제형제조 업무정지 15일	제형제조 업무정지 1개월	제형제조 업무정지 3개월	제형제조 업무정지 6개월	
해외제조 의약품등 있는 경		「약사법」제69조 의5제2항	해당 제조소의 수입의약품 수입 중단, 검사명령, 해외제조소 등록 취소				





